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242
----------	-------

발의연월일 : 2025. 8. 19.

발 의 자 : 김현정 · 강준현 · 김남근
김문수 · 민병덕 · 박정현
박홍배 · 양부남 · 이강일
이정문 · 조계원 · 차지호
최혁진 · 황명선 의원
(14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신의성실의무,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과 청약의 철회, 위법계약의 해지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등을 규정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상호금융업권 중에서는 신용협동조합만이 이 법을 적용받고 다른 상호금융업권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 금융소비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업권 내 규제 차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용협동조합 외 타 상호금융업권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상호금융업권 간의 규제 형평성을 해소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모든 상호금융업권인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를 이 법에 따른 금융회사의 정의에 포함하고, 중앙회는 금융상품직접 판매업자로, 조합은 금융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구분함(안 제2조제6호 및 제4조).
- 나. 각 조합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의 평가 및 결과의 공표는 해당 중앙회의 회장이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단서 신설).
- 다.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상호금융업권을 조정대상기관에 포함하여 금융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 라. 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상호금융업권에 대하여 해당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업무정지명령 또는 인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 마. 중앙회장의 각 조합에 대한 검사와 처분 권한을 부여하고, 조합이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를 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56조의2 신설).
- 바. 새마을금고의 감독 및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66조의3 신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가목 중 “제3조제1항, 「신용협동조합법」 제6조제3항, 「농업협동조합법」”을 “제3조제1항,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한국산업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 농협은행”을 “한국산업은행, 농협은행”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을 카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카목(중전의 바목) 중 “마목까지의”를 “차목까지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자.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11. “중앙회”란 제6호바목의 신용협동중앙회 또는 같은 호 사목부터 차목까지의 각 중앙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2. “조합”이란 제6호바목부터 차목까지의 신용협동조합, 각 조합 또

는 금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16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17. 제2조제12호에 따른 조합: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제3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각 조합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의 평가 및 결과의 공표는 해당 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이 할 수 있다.

제33조 중 “기관”을 “기관과 이 법 제2조제6호사목부터 자목까지의 금융회사”로 한다.

제51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6호사목부터 자목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6호사목부터 자목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제4항 또는 제5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검사 및 처분 등) ① 중앙회장은 조합감사위원회 또는 그 소속 직원에게 조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51조제2항에 따른 조치

2. 제52조제1항에 따른 임원에 대한 조치요구

3.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③ 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조합이 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대상 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조합의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중앙회장의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는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제56조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중앙회장”으로, “금융위원회(제56조제3항 및 제4항에 한정한다)” 또는 “금융감독원”은 “중앙회”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조합”으로 본다.

제7장에 제6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3(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례) ① 제2조제6호차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제48조부터 제56조까지(제49조제2항, 제51조제4항·제5항 및 제56조제3항·제4항은 제외한다), 제56조의2 및 제57조부터 제66조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금융감독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회장”으로, “금융감독원”은 “중앙회”로, “조합감사위원회”는 “금고감독위원회”로 본다.

② 제2조제6호차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제56조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행정안전부”로, “금융감독원”은 “행정안전부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6호사목부터 차목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제28조의 적용은 이 법 시행 이후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6호사목부터 차목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제44조제2항의 적용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9조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6호사목부터 차목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제45조의 적용은 이 법 시행 이후 대리·중개 업무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청약의 철회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6호사목부터 차목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제46조의 적용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위법한 계약의 해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6호사목부터 차목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제47조의 적용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4조제2항 중 “아니하면”을 “아니하거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으로 한다.

제167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5조제3항 중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이

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등”이라 한다)이나 이 법등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으로 한다.

제170조제4항 중 “아니하면”을 “아니하거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으로 한다.

제173조제1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70조제4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해당 업무를 계속한 경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가 정지된 경우에 한정한다)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제1항 중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이 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등”이라 한다)이나 이 법등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으로 한다.

제125조제2항 중 “아니하였을”을 “아니하거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127조제1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25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해당 업무를 계속한 경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가 정지된 경우에 한정한다)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하는 경우”를 “인정하는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6. -----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소기업은행법」 제3조제3항, 「한국산업은행법」 제3조제1항, 「신용협동조합법」 제6조제3항,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제8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제2항, 「상호저축은행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 농협은행, 수협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 ----- ----- -----제3조제1항, 「농업협동조합법」----- ----- ----- ----- -----한 국산업은행, 농협은행----- ----- ----- ---

나. ~ 마.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 10. (생략)

<신설>

<신설>

나. ~ 마. (현행과 같음)

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
협동조합중앙회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자.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카. -----차목까지의

7. ~ 10. (현행과 같음)

11. “중앙회”란 제6호바목의 신
용협동중앙회 또는 같은 호
사목부터 차목까지의 각 중
앙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것을 말한다.

12. “조합”이란 제6호바목부터
차목까지의 신용협동조합,
각 조합 또는 금고 중 어느

② 금융감독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 ④ (생략)

제33조(분쟁조정기구)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이하 “조정대상기관”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제5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① ~ ③ (생략)
<신설>

② -----

--. 다만, 각 조합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의 평가 및 결과의 공표는 해당 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이 할 수 있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분쟁조정기구) -----

-----기관과 이 법

제2조제6호사목부터 자목까지

의 금융회사-----

-----.

제5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6호사목부터 자목까지에 해당하는

<신 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항제 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6호사목부터 자목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항제 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4항 또는 제5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56조의2(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검사 및 처분 등) ① 중앙회장은 조합감사위원회 또는 그 소

속 직원에게 조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51조제2항에 따른 조치

2. 제52조제1항에 따른 임원에 대한 조치요구

3.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③ 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조합이 제5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대상 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조합의 제69조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중앙회장의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는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제56조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중앙회장”으로, “금융위원회(제56조제3항 및 제4항에 한정한다)” 또는 “금융감독원”은 “중앙회”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조합”으로 본다.

제66조의3(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례) ① 제2조제6호차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제48조부터 제56조까지(제49조제2항, 제51조제4항·제5항 및 제56조제3항·제4항은 제외한다), 제56조의2 및 제57조부터 제66조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금융감독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회장”으로, “금융감독원”은 “중앙회”로, “조합감사위원회”는 “금고감독위원회”로 본다.

② 제2조제6호차목에 해당하는

	<u>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u> <u>제56조제3항 및 제4항을 적용</u> <u>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행</u> <u>정안전부”로, “금융감독원”은</u> <u>“행정안전부 또는 새마을금고</u> <u>중앙회”로 본다.</u>
--	--